

##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규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목록통관절차”란 <u>개인용품,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절차를 말한다.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「<u>관세법 시행령</u>」 (이하 “<u>령</u>”이라 한다)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----- ----- -----.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6의2. 법 제257조에 따른 “<u>우편물목록</u>”이란 <u>통관우체국의 장(이하 “통관우체국장”이라 한다)이 우편물의 종류·품명·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.</u></p>	<p>○ 목록통관절차 용어 정의 정비</p> <p>- 무역통계 미반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,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목록통관 수출물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므로 조문 정비</p> <p>○ 우편물목록 용어 정의 추가</p>



현행	개정안	비고
<p>3. ~ 4. (생략)</p> <p>③ ~ ⑦ (생략)</p> <p>제7조의3(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「관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4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여야 하는 물품은 별표 12와 같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제35조의2(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) 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<u>200만원</u>(FOB 기준)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의3(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영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5조의2(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) ① ----- <u>400만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대상과 구분 명확화</p> <p>○ 조문 정비</p> <p>○ 수출기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36조(목록통관)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(수리)서 및 송품장, <u>별지 제6호서식의 (검사대상)통관목록(이하 “통관목록등”이라 한다) 또는 우편물목록을</u>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</p> <p>9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36조(목록통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, <u>별지 제6호서식의 통관목록(이하 “통관목록등”이라 한다) 또는 별지 제6의2호서식의 우편물목록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----- <u>제2호부터 제3호까지</u>----- -----.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통관목록 서식 개정 및 명칭 변경</p> <p>○ 별지 제6의2호 우편물 목록 서식 신설</p> <p>○ 수출신고 생략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7조제2항제1호(세관장 확인대상)는 제36조 본문(단서)과 중복되어 조문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37조(통관목록자료 전송) ①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(검사대상)통관목록(이하 "통관목록자료"라 한다)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. 다만,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, 세번부호(HSK 10단위)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37조(통관목록자료 전송) ① ----- ----- 별표 14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6호서식의 통관목록----- -----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7조의3(우편물목록 전송) ①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수출하려는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해당 통관우체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표 15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6의2호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우편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통관목록 서식명 변경</li> <li>○ 통관목록 작성요령 신설로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따른 조문 정비</li> <li>○ 관세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목록의 서식, 제출세관, 제출방법 등 우편물목록 제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</li> </ul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41조(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·검사결과 등록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직권 신고취소 등의 조치를 한 세관장은 이를 즉시 <u>특송업체</u>, 등에게 서면 또는 전산에 의한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42조(우편물목록의 특례) ① <u>세관장은 목록통관신고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, 심사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물목록을 제출받아 검사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44조(적재화물목록의 같음 등) ① (생략)</p>	<p><u>목록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1조(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·검사결과 등록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<u>특송업체</u>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2조(우편물목록의 특례) &lt;삭제&gt;</p> <p>제44조(적재화물목록의 같음 등) ① (현행과</p>	<p>○ 문장부호 오류 정비</p> <p>○ 우편물목록 제출 생략에 대한 특례조항은 관세법 제257조 우편물목록 제출 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조문 삭제</p> <p>○ 목록통관도 정정/취하/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②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물품에 대하여는 제2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</p> <p>제51조(동시포장 물품의 적재) ① (생략)</p> <p>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(이하 "동시포장등"이라 한다)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(Shipping Request)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.</p>	<p>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물품에 대하여는 제2장(제5절은 제외한다) 및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</p> <p>제51조(동시포장 물품의 적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2인 이상의 수출자는 동일한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수출신고된 경우,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다.</p> <p>③ 수출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(이하 "동시포장등"이라 한다)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(Shipping Request)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</p>	<p>각하의 근거 규정 마련</p> <p>○ 다수 수출자의 전자상거래 판매 물품을 1인 구매자에게 간이수출 시 합배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</p> <p>- 제2항 조문 신설에 따라 기존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	<p><u>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 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동시 재포장한 수출물품을 제48조제3항에 의한 적재이행신고 시에는 특송업체가 동시포장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</u></p>	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부 칙(관세청 고시 제2024-00호, 2024. 00. 00.)</u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/u></p> <p><u>제3조(적용례) 제37조제1항, 제37조의3제1항·제2항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 등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

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&lt; 신설 &gt;</p>	<p>[별표 14] 통관목록 작성요령 (제37조 관련)</p>	<p>○ 통관목록자료 세부 작성요령 신설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&lt; 신설 &gt;</p>	<p>[별표 15] 우편물목록 작성요령 (제37조의3 관련)</p>	<p>○ 우편물목록자료 세부 작성요령 신설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지 제6호서식] (검사대상)통관목록</p> <p>[별지 제6호서식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(검사대상)통관목록</b></p> <p>대한민국세관 KOREA CUSTOMS SERVICE 세관/과</p> <p>PAGE : 특송업체명 출항일시 : 적재항 : 항공편명 : 물품소재지 : (기재오류) 우편번호, 주소(도로명까지), 소재지 명칭 기재 물품소재지검사 신청 : 물품소재지검사 신청사유 : 검사자 :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83 852 851 1157"> <thead> <tr> <th>신고번호</th> <th>HOUSE AWB No.</th> <th>수출자 상호</th> <th colspan="3">품명 / 규격 / 수량</th> </tr> <tr> <th>반출사유</th> <th>목적국</th> <th>수취인 상호</th> <th>포장개수(CT)</th> <th>중량(Kg)</th> <th>가액(FOB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2">거래코드(01:전자상거래, 02:기업집중, 99:기타)</td> <td>사업자등록번호</td> <td colspan="3">세번부호(HSK 10단위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신고번호	HOUSE AWB No.	수출자 상호	품명 / 규격 / 수량			반출사유	목적국	수취인 상호	포장개수(CT)	중량(Kg)	가액(FOB)	거래코드(01:전자상거래, 02:기업집중, 99:기타)		사업자등록번호	세번부호(HSK 10단위)			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						<p>[별지 제6호서식] 통관목록</p> <p>[별지 제6호서식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통관 목록</b></p> <p>대한민국세관 KOREA CUSTOMS SERVICE</p> <p>1. 제출세관/과 : 2. 출항일시 : 3. 특송업체명 : 4. 항공편명/선박항차 : 5. 적재항 : 6. 목적국 : 7. Master AWB(B/L) no : 8. 물품소재지 : 9. 물품소재지검사 신청 : 10. 물품소재지검사 신청사유 :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13 874 1576 1157"> <thead> <tr> <th>11. 제출번호</th> <th>12. HOUSE AWB(B/L) no.</th> <th>13. 수출자</th> <th>14. 수출자 사업자등록번호</th> <th>15. 수취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16. 반출사유 01:전자상거래 수출 02:기업집중 03:전자상거래(해외직구) 반출 99:기타</td> <td colspan="2">17. 거래코드</td> <td rowspan="2">18. 세번부호 (HS)</td> <td rowspan="2">19. 품명·규격</td> </tr> <tr> <td>20. 수량(EA)</td> <td>21. 포장개수(CT)</td> <td>22. 중량(Kg)</td> <td>23. 가액(FOB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11. 제출번호	12. HOUSE AWB(B/L) no.	13. 수출자	14. 수출자 사업자등록번호	15. 수취인	16. 반출사유 01:전자상거래 수출 02:기업집중 03:전자상거래(해외직구) 반출 99:기타	17. 거래코드		18. 세번부호 (HS)	19. 품명·규격	20. 수량(EA)	21. 포장개수(CT)	22. 중량(Kg)	23. 가액(FOB)	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					<p>○ 통관목록 기재항목명 정비 및 항목별 번호 기재</p>
신고번호	HOUSE AWB No.	수출자 상호	품명 / 규격 / 수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반출사유	목적국	수취인 상호	포장개수(CT)	중량(Kg)	가액(FOB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거래코드(01:전자상거래, 02:기업집중, 99:기타)		사업자등록번호	세번부호(HSK 10단위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1. 제출번호	12. HOUSE AWB(B/L) no.	13. 수출자	14. 수출자 사업자등록번호	15. 수취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6. 반출사유 01:전자상거래 수출 02:기업집중 03:전자상거래(해외직구) 반출 99:기타	17. 거래코드		18. 세번부호 (HS)	19. 품명·규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0. 수량(EA)	21. 포장개수(CT)			22. 중량(Kg)	23. 가액(FOB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&lt; 신설 &gt;</p>	<p>[별지 제6의2호서식]</p>	<p>○ 관세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목록 제출서식 신설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[별표 14] 통관목록 작성요령 (제37조 관련)

항 목	작 성 요 령	작 성 예	조건
1. 제출세관 / 과	○ 특송업체가 취급하는 수출물품을 집하·보관하는 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/ 과 코드를 기재	- 040C3 (인천공항/통관검사3과)	필수
2. 출항일시	○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/항공기의 출항일시를 기재	- 202304012310	필수
3. 특송업체명	○ 특송업체 부호 기재 ※ 11. 제출번호(특송업체부호 6자리 포함) 기재로 대체	- AE0000	필수
4. 항공편명/선박항차	○ 수출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편명 또는 선박의 항차	- KE1234 - 23ABCDE001E	필수
5. 적재항	○ 수출물품이 적재되는 항구(5자리)·공항부호(3자리)를 기재 (※ 관세청 무역통계부호-항구 및 공항 부호 참조)	- ICN/KRPUS	필수
6. 목적국	○ 수출물품 최종 도착국가의 국가코드 및 지역코드를 기재 - (항공) ISO국가코드(2자리) + IATA도시코드(3자리) - (해상) UN/LOCODE(5자리)	- JPNRT/SAKAC	필수
7. Master AWB(B/L) no	○ 항공사 또는 선사가 발행한 Master AWB(B/L) 번호 기재	- 98812341234	필수
8. 물품소재지	○ 수출물품을 집하·보관하는 업체 창고 소재지의 주소를 우편번호(5자리)를 포함하여 기본주소(도로명주소)를 기재 하고 그다음 상세주소와 장치장소 명칭(업체 상호)을 기재 ※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	- (12345)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길 - oo물류창고	필수
9. 물품소재지검사 신청	○ 소재지 검사 희망 여부를 Y/N으로 기재	- Y	필수
10. 물품소재지검사 신청 사유	○ 소재지 검사를 신청(Y)한 경우에만 필수로 그 사유를 기재	- 출항시간 촉박	선택
11. 제출번호	○ 통관목록 제출번호를 기재 특송업체부호(6자리)+년도(4자리)+일련번호(8자리) ※ 일련번호 : 특송업체가 자율적으로 부여하여 기재	- AE0001-2023-00000001	필수
12. House AWB(B/L) no	○ 특송업체가 발행한 House AWB(B/L)번호 기재	- ABCD76527023AB01	필수
13. 수출자	○ 수출화주가 업체인 경우 상호명, 개인인 경우 성명을 기재 ※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	- GWANSE CO - HONGGILDONG	필수
14. 수출자 사업자등록번호	○ 수출 거래코드가 01(전자상거래)인 경우 수출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필수 기재 ※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재	- 123-45-67890	선택
15. 수취인	○ 물품 수취인이 업체인 경우 상호명, 개인인 경우 성명을 기재 ※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	- GWANSE CO - HONGGILDONG	필수
16. 반출사유	○ 아래 해당사유의 2자리 코드 기재 - AA: 유해,유골 - BB: 외교행낭 - CC: 재외공관물품 - DD: 외국원수물품 - EE: 보도용품 - FF: 기록문서,서류 - GG: 물품가격 200만원(FOB기준)이하의 탁송물품 - HH: 해외직구 반품물품	- GG	필수

항 목	작 성 요 령	작 성 예	조건
17. 거래코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출거래 형태에 따라 아래 해당코드를 기재</li> <li>- 01: 전자상거래 수출</li> <li>- 02: 기업건품</li> <li>- 03: 자가사용물품 (해외직구물품) 반품</li> <li>- 99: 기타</li> </ul>	- 01	필수
18. 세번부호(H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출물품의 품목번호 2단위 필수 기재</li> <li>-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HSK 10단위 필수 기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3</li> <li>- 3304201000</li> </ul>	필수
19. 품명·규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품명·규격을 정확히 기재</li> <li>- 상이한 물품의 경우 각각의 품명·규격을 기재</li> <li>※ 상세 품명이 아닌 막연한 품명(예, SAMPLE 등)을 기재하면 안됨</li> </ul>	- WOMAN SHOES	필수
20. 수량(EA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제 반출되는 수량을 기재</li> </ul>	- 7	필수
21. 포장개수(CT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포장단위의 구분없이 실제 반출되는 포장단위 개수를 기재</li> </ul>	- 2	필수
22. 총중량(KG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포장중량을 포함한 중량합계를 기재</li> <li>○ 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</li> </ul>	- 5.1	필수
23. 가격(FOB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FOB 기준의 원화 가격을 원단위까지 기재</li> </ul>	- 75,000	필수

[별표 15] 우편물목록 작성요령 (제37조의3 관련)

항 목	작 성 요 령	작 성 예	조건
1. 통관우체국명	○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는 통관우체국명을 기재	- 국제우편물류센터	필수
2. 우편물번호	○ 해당 우편물번호를 기재	- EA123456789KR	필수
3. 접수일자	○ 해당 우편물을 접수한 일자를 기재	- 20230801	필수
4. 우편물종류	○ 다음 우편물종류에 따른 번호를 기재 1. EMS 2. 소포 3. 등기통상 4. 일반통상 5. 기타	- 1	필수
5. 우편물구분	○ 다음 우편물구분에 따른 번호를 기재 1. 상용물품 2. 전자상거래물품 3. 선물 4. 견본품 5. 반송 6. 기타	- 1	필수
6. 운송방법	○ 다음 운송방법에 따른 번호를 기재 1. 항공 2. 해상	- 1	필수
7. 목적국	○ 해당 우편물이 도착하는 영문 국가코드(ISO코드) 를 기재	- US	필수
8. 총중량	○ 해당 우편물 총 중량(포장무게 포함) ○ 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	- 2.3	필수
9. 발송인명	○ 업체인 경우 상호명, 개인인 경우 성명을 기재 ○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	- 홍길동 - (주)길동무역	필수
10. 발송인 사업자등록번호	○ 업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※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재	- 123-45-67890	선택
11. 발송인 주소	○ 기표지에 기재된 발송인 주소를 기재 ○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	-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 302호	필수
12. 발송인 우편번호	○ 우편번호를 기재	- 12345	필수
13. 발송인 연락처	○ 기표지에 기재된 연락처를 기재	- 010-9876-5432 - 02-123-4567	필수
14. 수취인명	○ 해당 우편물을 수취하는 이름 또는 상호명을 기재 ○ 영문으로 기재	- ADAM SMITH - TESLA	필수
15. 수출신고번호	○ 수출신고를 한 경우, 수출신고번호를 기재	- 12345-23-789456X	선택
16. 품명	○ 품명을 정확히 기재(복수 품명인 경우 각각의 품명을 기재) ○ 동일 포장에 각각 상이한 물품이 내장된 경우 각 란별 구분 기재 ○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	- 스마트폰 케이스 - BOOK	필수
17. 일련번호	○ 복수 품명인 경우, 란 번호를 기재	- 2	필수
18. 세번부호(HS)	○ 기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HS입력 ※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HS 10단위 기재 필요	- 2106909099	선택
19. 수량	○ 기표지에 기재된 수량을 기재	- 10	필수
20. 물품가격	○ 기표지에 기재된 물품가격을 기재	- 200	필수
21. 통화코드	○ 물품가격 통화단위를 기재	- USD	필수
22. 원산지	○ 기표지에 기재된 원산지를 기재	- KR	선택
23. 제출일자	○ 해당 우편물목록을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한 일자	- 20230101	필수

# 통 관 목 록

대한민국세관  
KOREA CUSTOMS SERVICE

1. 제출세관/과 :
2. 출항일시 :
3. 특송업체명 :
4. 항공편명/선박항차 :
5. 적재항 :
6. 목적국 :
7. Master AWB(B/L) no :
8. 물품소재지 :
9. 물품소재지검사 신청 :
10. 물품소재지검사 신청사유 :

11. 제출번호	12. HOUSE AWB(B/L) no.	13. 수출자	14. 수출자 사업자등록번호	15. 수취인
16. 반출사유	17. 거래코드 01:전자상거래 수출 02:기업견품 03:자가사용물품(해외직구) 반품 99:기타	18. 세번부호 (HS)	19. 품명·규격	
20. 수량(EA)	21. 포장개수(CT)	22. 중량(Kg)	23. 가격(FOB)	

